

4.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 신규제정 1950. 6.23	대통령령 제 376호 상공부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일부개정 1962. 2.20	각령 제 466호 상공부	1. 사업의 명칭
□ 일부개정 1964. 3.11	대통령령 제1689호 상공부	2. 사업의 종류
□ 일부개정 1967. 3.8	대통령령 제2932호 상공부	3. 이유
□ 일부개정 1968. 8.29	대통령령 제3561호 상공부	4. 경영의 방법
□ 전문개정 1970. 5.15	대통령령 제5012호 상공부	전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일부개정 1973. 3.13	대통령령 제6550호 상공부	
□ 일부개정 1978. 3.9	대통령령 제8885호 동력자원부	
□ 전문개정 1986. 9.27	대통령령 제11973호 동력자원부	
□ 일부개정 1993. 3.6	대통령령 제13870호 상공자원부	
□ 일부개정 1993. 7.1	대통령령 제13922호 상공자원부	
□ 일부개정 1994. 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통상산업부	

◆ 최초 시행령 ◆

제1조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될 사업체는 석탄광산·석탄가공 및 그 분배의 업무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이를 결정한다.

대한석탄공사 전항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좌의 사항을 구비한 지정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지정을 요하는 이유

제3조 대한석탄공사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좌의 사항을 구비한 후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제4조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한석탄공사 총재는 설립등기를 본사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조의 설립등기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액
 5.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6. 공고의 방법
- 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서 전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대한석탄공사 설립 후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타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사,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규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함으로써 족하다.

제7조 대한석탄공사가 그 본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5조 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의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함으로써 족하다.

제8조 제5조 제1항의 사항 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법 제34조 제1항의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자본금 제1회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설립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신설 또는 사무소의 이전 및 제5조 제1항의 사항의 변경, 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한석탄공사 사체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사채신입증 기타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사채금액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조 제2항의 규정은 대한석탄공사 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대한석탄공사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 사채의 금액
3. 사채의 이율
4.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5. 이자지불의 방법 및 기한

제12조 전조에 의한 사채의 인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

에서는 2주일 이내 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전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등기할 사항으로써 관청의 인가를 요할 때에는 그 인가서가 도달되었을 때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4조 대한석탄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본사, 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각 등기소에서는 대한석탄공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령에 의한 등기는 총재의 신청에 의한다.

제16조 등기한 사항을 법원에서 지체없이 관보 및 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선민사령에서 의할 것을 정한 현행 비송사건수속법 제142조, 제143조, 제147조 내지 제151조의6 및 제154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본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동법 제149조 제2항 제1호, 제150조의3과 제151조의5중 지점이라 함은 지사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18조 대한석탄공사는 좌의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시기일을 명시하여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2.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

제19조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은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법 제17조의 승인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법 제21조의 승인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좌의 사항

을 구비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이유 및 목적
2. 발행총액
3. 소화방법
4. 상환방법 및 이율

제22조 설립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자본금의 불입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정부에 대하여 가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조의 출자증권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 총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대한석탄공사의 명칭
2. 대한석탄공사의 설립 년월일
3. 자본금액
4. 출자자
5. 출자금액

제25조 대한석탄공사는 설립 후 2주일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76호 1950.6.23〉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 (광업소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광업소·지사·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 (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 (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사업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

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 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 (이익준비금의 기본금전입) 공사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을 기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이익준비금의 기본금전입) 공사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을 기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총액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인수 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 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 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13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4조 (사채발행총액) 공사는 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발행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 청약서에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 (사채 인수기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6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7조 (사채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이권 흡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흡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

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사채소지인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부칙 (제11973호, 1986. 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